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3호(통권 138호) 2024. 9. 175~198
DOI http://dx.doi.org/10.22783/krila.2024.38.3.175

일본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한 고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the Japanese Corporate Hometown Tax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국 중 호**
Joongho Kook

목 차

Ⅰ. 기업판 고향납세의 위상
Ⅱ. 선행연구 검토와 본연구의 의의
Ⅲ. 기업판 고향납세의 내용 및 주의점
Ⅳ. 지방창생의 실시와 예산 변화에 따른 평가
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이 실시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고, 동 제도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은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세로서 기업판 고향납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세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주민세(법인의 지방소득세)의 부담도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에서처럼 기업판 고향납세를 실시하게 된다면 지방세에서 법인과세 세액공제와 같은 형태로 실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구에서는 그 시사점으로서 한일간 기업관련 과세 차이에 따른

* 본고는 2024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제2차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기부 도입관련 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동 포럼에서 지정토론을 하여 주신 기타큐슈대학의 신동애 교수님, 충남대학교의 염명배 교수님, 그리고 유익한 말씀을 하여 주신 행안부 박재연 균형발전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본고 투고시 받은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도 논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요코하마시립대학 국제상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24. 8. 9. 심사기간: 2024. 8. 9. ~ 2024. 8. 27. 게재확정일: 2024. 8. 27.

난항 극복 문제로서 한국은 국세 법인세의 세액공제가 되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악의적 이용 및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유착문제 대처 필요성, 부처 간 조율 및 사무국 조정의 필요성, 공사(公私)의 공동가치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기업판 고향납세, 지방창생,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orporate hometown tax implemented as an aspect of the local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 to enhance local economy, and to examine its implications for Korea. Unlike Japan, Korea does not operate the corporate business tax as a local tax deductible for the corporate hometown tax, and the burden of corporate inhabitant tax is also lower than in Japan. It means that if Korea were to implement corporate hometown tax like Japan, it would have the difficulty to prepare a tax deduction system at the same format of the Japanese one, such as the deduction of corporate business tax in local tax items. This paper provides its implication for Korea referring to the differences in operating the corporate hometown tax and the local tax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may create the corporate hometown tax with the tax deduction in corporate income tax of central level. In addition to it, we suggest other implications: the necessity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malicious use by the firms and the collusion between firms and local governments, the harmonization among the ministries in charge and the need to adjust its office, and the requirement to make efforts to propose common valu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 Keywords: Corporate Hometown Tax, Revitalization of Locality, Corporate Business Tax, Corporate Inhabitant Tax

Ⅰ. 기업판 고향납세의 위상

본고는 일본에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고, 동 제도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일본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한 위상과 그 의미를 짚어보기로 하자. 일본에서는 2008년 개인 대상의 고향납세제도가 창설되었는데, 기업판 고향납세는 그보다 8년 늦은 2016년 출발하였다. 기업판 고향납세라고 하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판 고향납세는 지방공공(자치)단체의 지방창생 사업 추진에 뜻이 있는 기업의 기부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이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지방창생을 심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제도이다.[1] 요컨대, 기업판 고향납세는 지방창생과 관련되는 일을 기업의 힘을 빌려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①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 ②지방으로의 인구유입, ③결혼·출산·육아 지원, 그리고 ④지역연계라는 기본 목표로 하여 지방창생(地方創生) 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개인판'[2] 고향납세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고향납세 기부를 하게 되면 2,000엔을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에서의 소득공제 및 주민세(한국의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되어 있다. '기업판' 고향납세라 한 이유는 이 제도가 '개인' 대상의 고향납세와 비슷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즉, '기업판' 고향납세에서는 국가(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은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창생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이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에 따른 경감(공제)에 더하여 세제상의 특례조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판 고향납세를 이용하여 기업이 기부를 하게 되면, 통상의 기부금 공제는 물론 기부 기업에 대한 특례조치로서 법인주민세(지방세), 법인세(국세), 법인사업세(지방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그 골자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지방창생 관련 기부(기업판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기부액의 하한을 10만엔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3]

일본 내각부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장점으로서 이하 세 가지를 들고 있다.[4]

---

1) 内閣官房·内閣府(2024)「地方創生応援税制(企業版ふるさと納税)」의 해설 영상을 참조한 것이다. 영상 URL은 말미의 참고문헌을 참조 바란다.

2) 고향납세라 하면 통상 '개인판' 고향납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3) 기업판 고향납세의 특례조치에 대하여는 제3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우선, 기부를 통해 지방창생 프로젝트를 응원함으로써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이라는 홍보(PR) 효과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판 고향납세를 통한 연계로 지방공공단체와 기업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처인 지방공공단체의 지역 자원을 살린 새로운 사업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를 기업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5)]

한국은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세로서 기업판 고향납세의 공제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세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주민세의 부담도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이 기업판 고향납세를 실시하게 된다면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세 법인관련 과세 세액공제와 같은 형태로 실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구의 주된 시사점으로서 한국은 국세법인세의 세액공제가 주로 이어지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 기업의 악의적 이용 및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유착문제 대처 필요성, 공사(公私)의 공동가치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제2절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의 연구가 한국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에서의 선행연구 검토와 본연구의 의의에 대해 언급한다. 제3절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의 경위를 비롯한 내용 및 주의점에 대해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동 제도가 지방창생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지방창생 제도를 살펴보고 기업판 고향납세와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 제5절에서는 한국에서 기업판 고향납세를 실시하게 된다면 기업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대비 및 부처간 조율 필요성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본연구의 의의

일본에서 '개인'의 고향납세 제도는 총무성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및 데이터도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이에 비해 기업판 고향납세는 내각부에서 관할하는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기업판 고향납세 데이터를 정리하여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4) 여기서 들고 있는 장점에 관한 언급은 内閣官房·内閣府(2024)「地方創生応援税制(企業版ふるさと納税)」를 보충하여 작성한 것이다.

5)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를 기업이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례에 대하여는 제5절의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부분을 참조 바람.

않은 실정이다. 지방창생 응원세제로 하여 운영되는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의 사무국은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과 '내각관방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회의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사무국은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데이터에 관한 정보보다는 동 기부 제도를 활용한 케이스를 많이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법인기부 포럼'[6]에서 가토(加藤, 2024)가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제도의 현황과 다양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가토의 발표는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이 펴내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인건비도 포함하여 기업의 고향납세 기부액에 대해 기부금 공제 및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로 확장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제3절에서 그 사례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판 고향납세에 관한 연구는 상당 수 이루어져 왔다. 오쿠노야 외(奥谷他, 2023)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를 통하여 지방창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을 지방(교토후 우지타와라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카하시 외(高橋他, 2022)는 지속가능한 목표(SDGs)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있어 기업판 고향납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스즈키(鈴木, 2021)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가의 자치단체가 책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판 고향납세 문제점 일부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1절의 모두(冒頭)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기업의 힘을 빌려 지방창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가케가이(掛見, 2024)에서는 기업의 사적이익이 공공이익과 일치한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효과적 이타주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고노(河野, 2023)에서는 사회재 공급에 있어 사적이익과 공공이익이 일치한다면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효과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의 적용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효과적 이타주의'에 관한 논의는 Singer(2015)에서 제기되었다. Singer(2015)는 윤리적 삶에 대한 사고를 '효과적 이타주의'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논의하면서 사적 이익과 공공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효과적 이타주의를 권하고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사업이 사적 이익이 대부분(예, 90%)이고 공공이익이 아주 일부(예, 10%)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그 사업의 공공이익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입장을 감안하면 공공이익 강조 경향에 행정기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6)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4년 7월 18일 세종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고향사랑 기부제 법인기부 포럼'을 말한다.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효과적 이타주의' 적용의 한계라고도 할 것이다.

스즈키(鈴木, 2023)에서는 2020년에 이루어진 기업판 고향납세에서의 세액공제 확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 제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2020년의 세제개정은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 건수 및 금액을 크게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제도를 기업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나 기업과 자치단체 간의 유착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7]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한국어 문헌 논문의 학술지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고는 그 효시적인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본에서 개인이 고향납세 기부를 하게 되면 통상의 기부금 공제에 더하여 개인 주민세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를 하게 되면 통상의 기부금 공제에 더하여 법인사업세 및 법인주민세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 본고는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다루고 있음은 물론,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지방창생 정책, 기업판 고향납세를 둘러싼 한일간 차이를 감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Ⅲ. 기업판 고향납세의 내용 및 주의점

1.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의 부담 비율 및 주의점

본절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 이용시의 기부액 공제, 세액공제, 기업 부담 비율, 그리고 동 기부 제도에서 나타나는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현행(2024년)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에 있어 기부금 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로

---

7) 이 점에 대해서는 제5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8)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고향납세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염명배(2010), 신두섭·염명배(2016), 남황우(2017), 원종학(2017), 홍근석·염명배(2019), 국중호·염명배(2018 및 2021) 등을 들 수 있다.

9) 일본의 '개인' 대상 고향납세가 '기업판' 고향납세와 크게 다른 점은 개인 대상 고향납세에서는 답례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스즈키·하시모토(鈴木·橋本, 2017)에서는 개인 대상 고향납세문제를 다루면서 홋카이도의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답례품 과열 경쟁의 억제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되어 있으며 기업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표 1〉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세액공제, 기업부담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현행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에서의 세액공제 및 기업부담 비율

<table>
<tr><th>기부금 손금산입에
에 따른 공제</th><th>법인주민세(지방세)와
법인세(국세) 에서의 공제</th><th>법인사업세(지방세)에서의 공제</th><th>기업
부담</th></tr>
<tr><td rowspan="2">30%</td><td>40%[1)]</td><td>20%[2)]</td><td rowspan="2">10%[4)]</td></tr>
<tr><td colspan="2">세액공제 60%[3)]</td></tr>
<tr><td colspan="4">기 업 판 고 향 납 세 기 부 액 100%</td></tr>
</table>

주: 1) 2020년 이전에는 법인주민세와 법인세에서의 세액공제가 20%였다.
2) 2020년 이전에는 법인사업세에서의 세액공제가 10%였다.
3) 따라서 위의 1) 및 2)를 합한 세액공제는 30% 수준이었다.
4) 그 결과 2020년 이전에는 기업부담은 40%의 수준이었다.
출처: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d)「企業版ふるさと納税の拡充·延長」(p.2)를 참조로 필자 작성.

〈표 1〉에서 보듯이 현행 기업판 고향납세에서 적용되는 공제는 통상의 기부금에 적용되는 손금산입에 따른 30%의 공제가 있게 되고, 그에 더하여 법인주민세(지방세)와 법인세(국세)에서 40% 공제, 법인사업세(지방세)에서 2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이는 기부금 손금산입 30%에 더하여 지방세(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와 국세(법인세)의 법인관련 과세에서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액의 60%를 공제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 손금 산입 공제 30%를 합하면 기업부담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적인 예로, 기업이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를 통하여 1,000만엔을 기부하였다면 최대 300만엔의 기부금 손금산입에 따른 공제에 더하여, 600만엔의 법인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부담은 실질적으로 100만엔만 부담하면 된다.

기업판 고향납세에서는 세목별 특례조치 및 공제액의 상한도 마련하고 있다(〈표 2〉).

〈표 2〉 기업판 고향납세에서의 세목별 특례조치 및 공제액의 상한

	세액공제 비율	공제액의 상한
법인주민세	기부액의 40%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액의 20%
법인세	법인주민세에서 기부액의 40%에 달하지 않을 시 그 잔액*	법인세액의 5%
법인사업세	기부액의 20%	법인사업세액의 20%

주: * 단, 법인세 공제는 기부액의 10%를 그 한도로 하고 있다.
출처: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d)「企業版ふるさと納税の拡充·延長」(p.2)를 참조로 필자 작성.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목별 세액공제 방식을 보면, 법인주민세에서 우선 기부액의 40%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주민세 공제에서 기부액의 40%에 달하지 않을 시는 그 잔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인사업세에서는 기부액의 2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기업판 고향납세의 세액공제에서는 법인주민세, 법인세, 법인사업세별 특례조치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다. 〈표 2〉의 우측열에서 보듯이 세목별 공제액에 대한 상한은 법인주민세의 경우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액의 20%,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액의 5%, 법인사업세의 경우 법인사업세액의 20%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 수는 47개 도도부현인데, 2024년 4월 1일 시점에서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받은 지방공공단체의 수는 도쿄도(東京都)를 제외한 46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1,598개 시정촌(市町村)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단체수는 1,718단체로 되어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93.0%)의 시정촌이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받은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향납세 기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몇몇 절차[10]를 밟아 기부를 할 수 있지만, (a)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도도부현(예, 도쿄도), (b)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기성 시가지에 소재하는 시구정촌(市區町村)[11], (c) 본사가 소재하는 지방공공단체로의 기부는, 고향납세 기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a)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b)는 대도권이라는 점에서 기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c)는 기업판 고향납세의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기부 기업으로의 보답 혜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지자체와의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동을 건다는 차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받은 단체로서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향납세 기부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기부 기업은 기부의 대가로서 지방공공단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

10) 기업판 고향납세의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의 ①~⑧의 절차를 밟게 된다. ① 자치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중앙정부)에 신청함(종합전략의 책정). ② 국가(내각부)는 지역재생계획을 심사·인정·공표함. ③ 지방공공단체가 ①의 지방판 종합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입안하여 기업에 기부를 권유함('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에서처럼 기업이 사업의 기획·입안의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본절 제3항을 참조 바람). ④ 권유를 받은 기업이 기부를 검토하고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기업이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⑤ 지방공공단체가 사업을 실행 단계에 옮김. ⑥ 기업이 기부금을 지불(입금)함. ⑦ 기부금을 받은 지방공공단체가 기부 기업에 수령증을 교부함. ⑧ 기부 기업은 국세(법인세)에 대해서는 세무서, 지방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에 대해서는 본사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업판 고향납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신고하여 세제상의 우대 조치(세액공제)를 받음. 이상의 활용절차 부분 및 본문의 주의점 부분은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a) 「企業版ふるさと納税」 및 内閣官房·内閣府(2024) 「地方創生応援税制(企業版ふるさと納税)」를 참조하고 필자의 해석을 가미하여 작성한 것이다.

11) 수도권정비법에서 정하는 근교정비 지역도 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기부의 대가로서 보조금을 받거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prepaid card) 등의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하나, (a) 지방공공단체의 홍보지나 홈페이지 등에서의 기부 기업명 소개, (b) 기부 기업명이 들어간 명판(이름판)의 설치, (c) 공정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지방공공단체와의 계약과 같은 행위나 활동은 할 수 있다.

2. 세액공제 개편에 따른 기부 확충 및 관련변수 추이

일본 정부는 기업판 고향납세제도의 확충을 위한 세제 개정을 도모하여 왔다. 〈표 1〉하단의 주석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2020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세액공제를 크게 확충하였다. 2020년 이전에는 법인주민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가 20%, 법인사업세에서의 공제가 10%로 되어 있어 이 둘을 합한 세액공제는 30%였다. 이는 2020년 이전에는 30%였던 세액공제를 2020년부터 60%로 하고, 40%였던 기업부담을 10%로 줄이는 개혁하였음을 뜻한다.[12] 이러한 대폭적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업부담 축소 개혁은 2020년을 계기로 기부건수, 기부액, 기부활용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표 3〉은 기업판 고향납세의 기부건수, 기부액,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 기부활용단체, 지방세 수입 대비 기부액의 비중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이 중 기부건수(a)와 기부액(b)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기업판 고향납세의 기부건수, 기부액, 기부활용단체의 추이

	기부건수 (a)	기부액 (억엔) (b)	건수당 평균기부액 (만엔): (b)÷(a)	기부활용 단체수	지방세 대비 기부액(b)의 비중(%)
2016	517	7.5	145.1	118	0.002
2017	1,254	23.6	188.2	253	0.006
2018	1,359	34.8	256.1	287	0.009
2019	1,327	33.8	254.7	293	0.008
2020	2,249	110.1	489.6	533	0.027
2021	4,922	225.7	458.6	956	0.059
2022	8,390	341.1	406.6	1,276	0.083
합계	20,018	776.6	388.0		

출처: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3), 吉沢(2018), 植松(2020), 藤井 木原(2022), 寺﨑(202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12)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c)「企業版ふるさと納税の大幅な見直し(令和2年度~)」참조.

〈그림 1〉 기업판 고향납세의 기부건수와 기부액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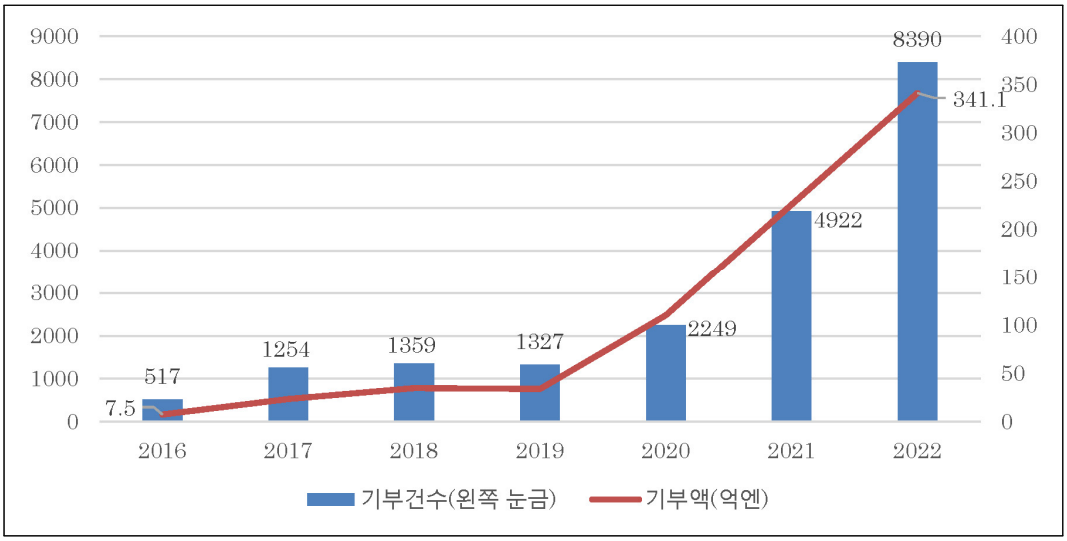

주: 2016년과 2022년 고향납세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은 각각 145.1만엔(=7.5억엔÷517)과 406.6만엔(=341.1억엔÷8390)으로 이 기간 동안 2.8배나 증가했다.
출처: 〈표 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1〉에서 보듯이 기업판 고향납세의 기부건수와 기부액은 2020년을 계기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기업판 고향납세가 시작되는 2016년의 기부건수는 517건, 기부액은 7.5억엔이다. 이들 수치를 이용하면 2016년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은 145.1만엔(=7.5억엔÷517)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기부건수가 8,390건, 기부액은 341.1억엔으로 크게 늘어나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도 406.6만엔(=341.1억엔÷8390)으로 2016년에 비해 2.8배나 늘어났다. 기부건수와 기부액이 크게 증가된 계기는 앞서 언급한 2020년부터 실시된 세액공제 확대 및 기업부담 축소였다. 〈그림 1〉로부터도, 2020년 세제개혁 이후 기부건수와 기부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기부건수의 상대적 수치도 크게 높아졌다. 〈표 3〉이나 〈그림 1〉에 있는 값을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듯이, 2020년은 2,240건으로 2019년 1,327건에 비해 1.7배, 2021년 4,922건으로 2020년에 비해 2.2배, 2022년 8,390건으로 2021년에 비해 1.7배나 늘어났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기부액도 기부건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세수 대비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액의 비중도 높아졌다. 〈표 3〉의 우측열을 보면 그 비중이 2016년 0.002%에서 2022년 0.083%로 최근 6년 동안 43.4배(=0.083÷0.002)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대폭 확충된 2020년의 0.027%와 비교하여도 2022

년은 3.1배(=0.083÷0.027)나 상승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그만큼 일본 기업의 기업판 고향납세 이용 빈도가 높아졌고, 지방세 세수 대비 기부액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 활용 자치단체수는 〈그림 1〉에서 보인 기부건수 및 기부액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은 이들 변수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3〉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의 기부활용 단체수와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도 보이고 있는데, 〈그림 2〉는 이들 두 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기부활용 단체수와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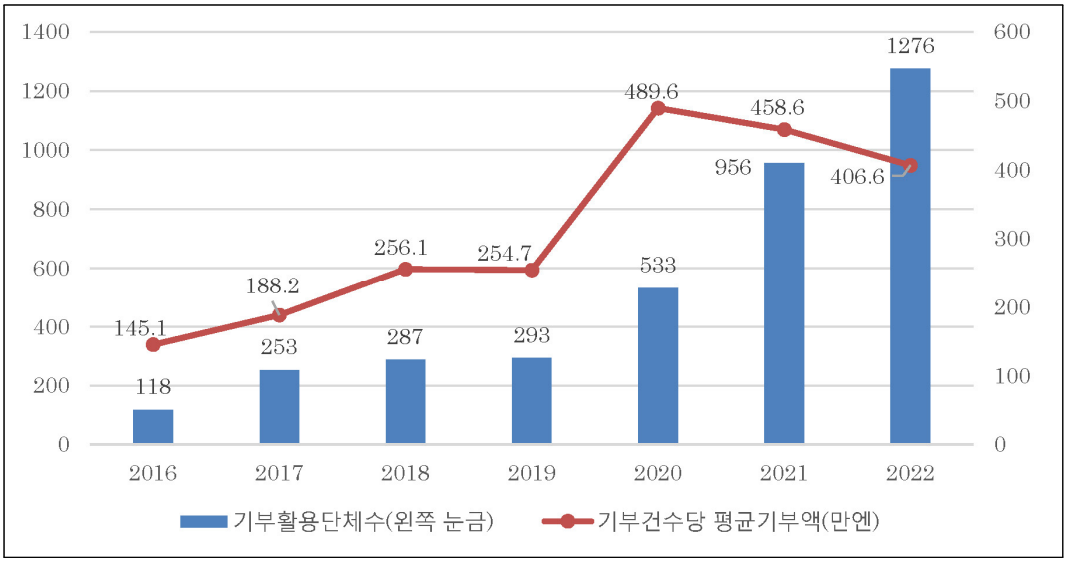

출처: 〈표 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함으로써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건수·기부액과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은 최근 들어 상이한 추이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2〉의 기부활용 단체수는 〈그림 1〉의 기부건수 및 기부액과 비슷한 추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의 대폭적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업부담 축소는 기부활용 지방자치단체수도 크게 늘어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은 이들 세 변수(기부건수, 기부액, 기부활용 단체수)와는 다른 추이를 보인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기업판 고향납세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늘린2020년 세제개정으로,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은 2019년 254.7만엔에서 2020년 489.6만

엔으로 1.9배나 늘어났다. 그러다가 2020년 이후의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은 줄어들고 있다.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은 2022년에는 406.6만엔으로 2020년(489.6만엔)에 비해 17.0%나 줄었다. 2020년 이후 기부건수당 평균기부액이 줄어든 이유는 기부건수가 늘었다고는 하나 소액 기부가 점차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3. 기업판 고향납세(인재파견형)

일본 정부는 기업판 고향납세의 활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2020년 10월부터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를 창설했다. 이는 기업이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기업판 고향납세로 기부하여 사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은 그 기부와 관련된 기부금 공제와 함께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는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는 기업 인재를 기부 활용사업을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파견하여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가일층 지방창생의 충실·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제도의 활용 실적을 보면 2024년 4월 1일 시점에서 파견자 157명, 활용 단체 119 단체가 되고 있다.[13)]

일본이 기업판 고향납세에 인재파견형 형태를 도입한 데에는 그것이 지방공공단체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점'으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다.[14)] 우선,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 인재가 기부금 활용사업의 프로젝트에 종사하게 되어 지방창생 충실화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지방공공단체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인구를 창출하고 그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재파견형 고향납세가 '기업에 주는 장점'도 대략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기부금액에 파견 인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기부하고 기부금액의 90%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창생 사업추진시 별도의 인건비가 그리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의 기획·실시에 전문인재가 파견되어 참여하게 되므로 기업 노하우를 활용한 지역공헌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를 인재육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13) 내각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수치이며, 파견자, 활용단체는 이 시점까지의 합계 수치임.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b)「企業版ふるさと納税(人材派遣型)」 참조.

14) 지방공공단체 및 기업의 입장에서의 장점은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b)「企業版ふるさと納税(人材派遣型)」를 참조하고 필자의 견해를 가미하여 작성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 활용한 사례도 많다. 내각부에서는 이를 기업이 인재파견형 고향납세 기부를 통해 지방공공단체와 기업간의 윈윈(Win-Win) 관계의 사례로 보고 있다.[15] 〈표 4〉는 몇몇 기업판 고향납세(인재파견형)의 활용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기업판 고향납세(인재 파견형) 활용 사례

기업	활용 내용
다이이치(第一) 생명보험(주)	5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원을 파견하여 보험영역을 넘어 그린투어리즘, 스마트시티 조성, 이주 촉진 분야에 종사
리코재팬(주)	나라(奈良)현 가츠라기시(葛城市)에 시스템엔지니어(SE)를 파견하고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제고하여 주민서비스 향상과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추진
규슈(九州)전력(주)	구마모토(熊本)현의 탈(脫)탄소사회 실현, 에너지 절약사업 등 지구온난화 대책 사업을 실시
료비(両備) 홀딩스(주)	오카야마(岡山)현 마니와시(真庭市)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
미야자키타이요(宮崎太陽)은행· 오쿠키리시마(奥霧島)상사(주)	다카하라쵸(高原町)와 연계협정을 체결하여 지역상사의 운영 지원, 지역자원을 살린 신상품 개발, 수익모델 구축 업무에 종사
링구로(주)	야마가타(山梨)현 후나가타쵸(舟形町)의 폐교 활용사업 추진, 청사내의 디지털화, 마을 주민의 IT 의식 향상에 기여

출처: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b)「企業版ふるさと納税(人材派遣型)」으로부터 발췌 작성.

〈표 4〉에서 보듯이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분야를 보면 그린투어리즘,[16] 스마트시티 조성, 이주 촉진,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업무 효율화, 에너지 절약, 관광진흥,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수익모델 구축, 폐교 활용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등 그 활용이 여러가지 사업에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 활용시의 난점도 도사리고 있다. 그 난점으로서, 자치단체와 기업의 유착이 심해지지 않도록 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대상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기업으로부터 어떤 인재를 받아들이는지, 해당 인재를 얼마 동안 받아들이는지를 대외적으로 밝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자치단체로부터 기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 공여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창생 사업의 지역재

15)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b)「企業版ふるさと納税(人材派遣型)」을 참조.

16)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어·산촌에 체재하며 체험학습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교류를 도모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생계획에 기재한 효과 검증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 내각부에서도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 활용시 '투명성 확보, 이익공여 금지, 효과 검증'을 그 주의점으로 들고 있다.[17)]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는 지방창생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을 유도하기 위해 보통의 기부금 공제에 더하여 기업관련 조세의 세액공제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곧 기업판 고향납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방창생 제도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이하 제4절에서는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 왔는지를 예산 변화에 따른 평가에 기초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Ⅳ. 지방창생의 실시와 예산 변화에 따른 평가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지방 경제대책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3월 26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방경제 대책을 지시했고, 그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각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실정 파악에 들어갔다.

이 지식인 간담회는 2013년 9월 보고서를 내어, (1) 지역산업 유지 및 지방기업의 육성 발전의 심각성, (2) 저출산 고령화 전전에 따른 지역공동체(community) 유지 곤란 지역의 증가, (3)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초래한 엔화가치 하락(엔저)과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수익 악화 및 지역간 격차 심화, (4) 지역 유지를 위한 후계자 부족 및 농업소득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이 유입되고 안심하고 지낼 수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적이며 풍요로운 생활 향유'를 내세웠다.

지방창생 정책이 본격화 단계에 들어간 것은 2014년 12월 14일의 중의원[18)] 총선이 있은 다음에 발족된 제3차 아베 내각에서였다. 이 내각에서 발족된 지방창생본부 회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비전'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결정하였다.[19)] 이어 '경제

17)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4b)「企業版ふるさと納税(人材派遣型)」참조.

18) 일본 국회는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이원(二院)제로 되어 있는데, 예산 배정에서는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위성을 갖고 있다.

19) 국무회의에서 이들 비전과 종합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 경제대책'용으로

재정 운영 기본방침 2015', '일본 재흥전략 개정 2015', '마을·사람·일자리 기본방침 2015'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2015년도 말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판 종합전략'을 책정하게 되면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인 지방창생 실시 단계에 들어갔다.

일본 내각부는 지방창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내세웠다. 지방창생 비전은 지역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 진전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지역 특성을 살린 지속성 사회 창출'로 잡고 있다. 지방창생 정책에서는 이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려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나 지역내에서의 인구 증가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네 가지 기본 목표를 내걸었다. 이들 목표를 필자 나름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0]

(1)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심하고 일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함

(2) 인구유입: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듦

(3) 결혼·출산·육아 지원: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의 희망을 충족시킴

(4) 지역연계: 시대흐름에 맞고 안심감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을 창출함

내각부는 위의 기본 목표에 그치지 않고, '(1) 다양한 인재의 다양한 활약을 추진하며, (2)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동력으로 삼는다'고 하는 두 가지를 지방창생 정책 추진을 위한 횡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내세운 일본은 실제로 지방창생 예산을 많이 배정하며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갔다.

2016년 지방창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다음 그 예산 규모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표 5〉는 2016년과 2021년을 대상으로 지방창생 예산 규모와 함께 이 기간 동안의 증감률을 위에서 제시한 지방창생 목표별로 정리하고 그 5년간의 예산 증감률을 계산하여 보인 것이다. 또한 〈표 6〉에서는 지방창생 예산 증감률과 어떻게 다른지를 대비하기 위해 2016년과 2021년을 대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일인당 명목 GDP 등의 주요 경제·재정 지표의 규모와 그 변화를 보이고 있다.

3.5조엔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20)국중호(2022)에서 언급한 것을 다듬어 싣고 있다.

〈표 5〉 지방창생 본격 실시 후 정책 목표별 예산 규모와 5년간 증감률

	2016	2021	5년간 증감률
기 본 목 표	억엔	억엔	%
(1) 일자리 창출[1]	1,895	1,655	-12.7
(2) 인구유입[2]	649	414	-36.2
(3) 결혼·출산·육아 지원[3]	1,099	3,714	237.9
(4) 지역 연계[4]	2,936	4,133	40.8
횡 단 적 목 표			
(1) 다양한 인재의 다양한 활약을 추진		197	
(2)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동력으로 삼음		1,244	
지방창생교부금	1,000	1,000	
합 계	7,579	12,357	63.0%

주: (1)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심하고 일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함
(2) 인구유입: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듦
(3) 결혼·출산·육아 지원: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의 희망을 충족시킴
(4) 지역연계: 시대흐름에 맞고 안심감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을 창출함

출처: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2016)「平成28年度 地方創生関連予算等について」 및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2021)「令和3年度予算における地方創生予算等の体系」을 이용하여 작성.

〈표 6〉 2016년과 2021년의 주요 경제·재정 변수 규모와 증감률

	2016	2021	5년간 증감률
경제·재정 변수	조엔	조엔	%
명목 국내총생산(GDP)	544.4	541.4	-0.6
일인당 명목 GDP	428.8	431.3	0.6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	102.8	106.6	3.7
국세수입	62.2	61.1	-1.8
지방정부 보통회계 세출	85.8	89.9	4.8
지방세수입	39.4	38.3	-2.8
			5년간 증가률
국가채무잔액의 GDP대비 비율	232.5%	256.9%	24.4%p

출처: 財務省(各年度)『財政関連資料 総務省(各年度)『地方財政統計年報』 및 内閣府(各年度)『国民経済計算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 5〉의 지방창생 정책의 목표에 따른 예산규모 및 변화에 기초하여 그 평가를 시도하기로 하자. 〈표 5〉를 보면 지방창생 정책에 있어 (4)지역연계 사업에 예산 배정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면서 그 증가율은 2016년에서 2021년의 5년 동안 40.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창생 정책의 예산 배정 순서는 바뀌었다. 2016년 기본목표에 기초한 예산 배정의 순서를 보면 (4)지역연계(2,936억엔), (1)일자리 창출(1,895억엔), (3)결혼·출산·육아 지원(1,099억엔), (2)인구유입(649억엔)의 순서였다. 그러던 것이 5년 후인 2021년에는 예산 배정의 순서가 (4)지역연계(4,133억엔), (3)결혼·출산·육아 지원(3,714억엔), (1)일자리 창출(1,655억엔), (2)인구유입(414억엔)의 순서로 바뀌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분야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이다. 〈표 5〉의 (3)결혼·출산·육아 지원에 대한 예산 배정을 보면 2016년 1,099억엔이었다가 2021년에는 3,714억엔으로 이 기간 동안에 237.9%의 증가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방창생을 실시하면서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충족시킨다는 기본 목표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창생 정책을 위한 사업 예산은 〈표 6〉의 주요 경제·재정 지표의 증감률과 비교해 보아도 양자 간에 그 변화 차이가 크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6〉(주요 경제·재정 지표의 증감률)에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일인당 명목 GDP,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 국세수입, 지방정부 보통회계 세출, 지방세수입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2106년과 2021년 사이의 이들 지표는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표 5〉 하단 오른쪽에 보이고 보듯이, 지방창생 예산은 같은 5년 기간 사이에 63.0%나 증가하고 있다.[21]

이상의 지방창생 정책 사업 규모와 그 변화로부터 일본은 주요 경제·재정 변수에 비해 지방창생 정책을 중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방창생 정책에 대한 응원세제로서 제3절에서 살펴본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가 이용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가 핵심으로 있으면서 지방창생 정책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기업판 고향납세라는 이름으로 하여 지방창생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V.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기업의 악의적 이용 사례로 본 대처 문제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조심하여야 할 것은 기업의 악의적 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21) 즉, 2106년 7,579억엔에서2021년 1조2,357억엔으로의 변화값이다.

이다. 여기서는 기업의 악의적 이용 사례와 그 대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 항에서 그 이외의 제도 운영 설계와 관련된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2024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일본에서는 기업의 고향납세 기부를 둘러싼 악의적 환류 의혹 사례가 크게 보도되었다.[22] 그 사례는 후쿠시마(福島)현 구니미쵸(国見町)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금을 원(原)자금으로 하여 기획한 '고성능 구급차 연구개발사업'을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회사가 수주하여 '자금 환류 의혹' 이 발생한 사례였다. 고성능 구급차 연구개발사업에서는 DMM 그룹에 속하는 DMM.com을 비롯한 몇몇(A사, B사) 기업이 기부한 4.3억엔을 사업비(원자금)로 하여 '관민 공동창조 콘소시엄' 형태로 입안했다. 이 연구개발사업을 구니미쵸가 '원테이블사(社)'라는 식품회사에 사업위탁을 했고 원테이블사(社)가 사무국을 담당했다.

〈그림 3〉은 기업판 고향납세 활용사업 사례에서 나타난 기업간의 '짜고치기' 및 구니미쵸(행정기관)와 업자들과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그림 3〉 기업판 고향납세 활용 사업의 구니미쵸(행정기관)와 업자들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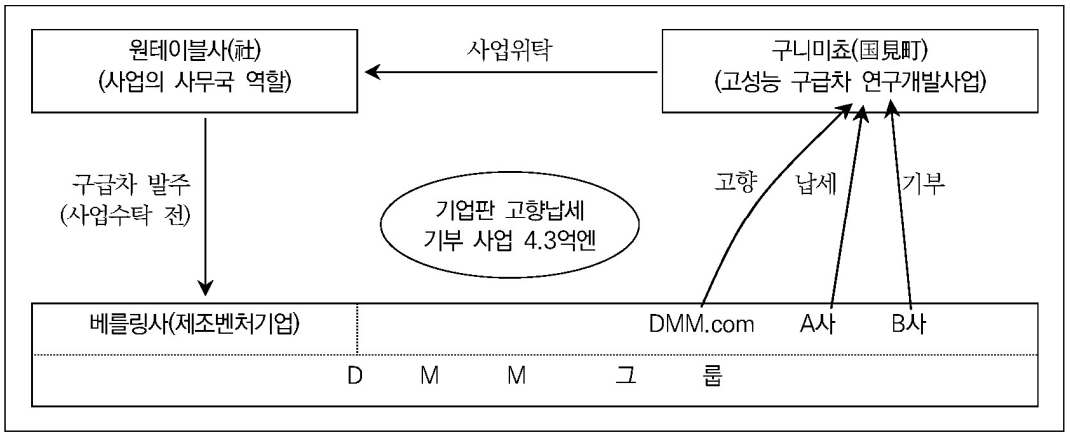

출처: 아사히(朝日)신문 2024년 6월 28일자 및 7월 11자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3〉을 보면 구니미쵸와 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사업의 악의적 사례가 드러난다. 구니미쵸가 고성능 구급차 연구개발사업 실시 주체를 모집하였을 때 '원테이블'사(社) 만이 응모하였고, 구니미쵸는 '원테이블'사에 사무를 위탁하여 행정기관(구니미쵸)과 민간기업(원테이블사)의 '짜고치기'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사히(朝日)신문 보도

22) 아사히(朝日)신문 2024년 6월 28일자 및 7월 11일 자. 이하는 이들 보도 내용에 필자의 견해 및 해석을 덧붙여 작성하고 있다.

에 따르면,[23] 사업 수탁을 하기 10개월 전에 이미 '원테이블'사가 구급차 12대 중 7대를 제조벤처 기업인 '베를링'사(社)에 발주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업계약도 입찰형식을 빌린 수의(隨意)계약이었다.

구급차를 제조한 '베를링'사(社)는 DMM 그룹의 자회사였으며, 사업비를 기부한 DMM.com을 비롯한 몇몇 기업(A사, B사) 모두 DMM 그룹 내 회사들이었다. 이러한 그룹내 회사간의 관례를 통해 DMM 그룹이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자회사가 구급차 제조의 사업 수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판 고향납세가 민간기업의 '자금세탁' 또는 '행정기능 탈취'로 이용(전락)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3〉의 사례와 같은 기업의 악의적 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이 요구된다.

제3절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기업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행정기관 담당자와 기업간의 유착이 있게 된다면 기부기업과 비(非)기부기업간의 심한 불공평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판 고향납세를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 기부금을 내는 기업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설계, 달리 말해 기업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는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한국에 접목시킨다면 기업의 영리목적을 위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의 예시는 기업판 고향납세의 실시에 있어 '정경유착의 차단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 경영자는 해당 사업 기획시 입지 좋은 곳을 개발하도록 자치단체에 제기하거나 또는 정치가를 통해 압력을 가하도록 해달라는 로비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는 기부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입찰 등에서 유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리조트 개발회사가 넓은 부지의 확보를 내세우며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를 이용하였다고 하자. 실제로 넓은 부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개발회사는 리조트 사업 관련의 '관민 공동창조 콘소시엄' 형태를 제기하며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기부하고 후에 해당 기업의 자본 이득을 올리기 위한 의도로 그 이용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떠한 제약을 가하고 기업이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든 기업의 악의적 이용 사례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 운영시 성선설(性善說)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성선설에 기초하여 기업판 고향납세를 실시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감시기관을 어떻게

23) 아사히(朝日)신문 2024년 6월 28일자 참조.

만들 것인가 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감시기관 구성원과 기업과의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서는 사업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지역 전통 예능이나 경관 및 자연 보호, 사회공헌과 같은 공공성 사업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 행정기관으로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사전 서약서를 받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2. 제도 운영 설계와 관련된 시사점

1) 부처 간 조율 및 사무국 조정의 필요성

제3절의 논의로부터 알 수 있었듯이 지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는 지방창생 정책의 실시 일환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지방창생 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담당 업무도 전체 부처 (성청)를 아우르는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기업판 고향납세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 부처간 조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는 2015년 6월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방창생(創生)'을 위한 시책으로 자리매김하여 내각관방, 재무성, 총무성, 내각부 등의 담당자가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작업반(공부모임)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지방창생 실시 경위로부터 엿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면, 단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친다기 보다는 여러 관계부처(총리실,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등과도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이 지방창생 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어디를 담당사무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작업이 요구된다.

2) 한일간 기업관련 과세 차이에 따른 난항 극복

일본은 법인2세라 하여 지방세로서 법인주민세와 법인사업세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법인사업세와 같은 지방 법인과세가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에서 기업판 고향납세의 실시에 있어 지방법인과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지방세가 그리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판 고향납세의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

라에서 기업판 고향납세가 국세 법인세 세액공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행정안전부·자치단체와 기재부와의 세액·세율 조율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지방교부세와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액공제의 형태로 기업판 고향납세의 실시가 된다면 국세 법인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법인세는 지역간 편재도 심하기 때문에 기업판 고향납세가 정착될 경우 지역간 재원편중도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중견기업이 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지방창생의 추진과 지역간 재정형평화 제고 사이에 갈등 요인이 잠재해 있다. 기업판 고향납세 실시로 국세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지역간 편재가 심해진다면, 지역간 재정형평화 역할을 도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 문제 재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공사(公私)의 공동가치 창출 노력

가케가이(掛見, 2024)에서는 사적 이익을 키워 사회공헌을 하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의 예를 들고 있으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기업 또는 기업인의 사적이익의 사회환원을 금방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면이 있다. 윤리성에 기초한 높은 의식의 자본주의를 강조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모두 공공이익 제고 의식이 높다고 상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기업의 공공이익 제고에 대한 의식을 높여가며 공사(公私)의 공동가치를 창조해 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2024년 7월부터 1만엔 지폐 주인공으로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를 내세웠다. 거기에는 시부사와가 사회공헌과 사적이익이 모순되지 않음을 강조한 실업가(實業家)였다는 배경이 자리한다.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논어와 주판渋沢栄一(2010)『論語と算盤에서는 공공이익(논어)과 사적이익(주판)의 동시 추구가 강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가케가이 유타(掛貝祐太). (2024). 기업판 고향납세제도의 비판적 검토.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제2차 고향사랑 기부제 법인기부 포럼」 발표 원고, 세종회의실, 2024년 7월 18일.

가토 다카요시(加藤隆佳). (2024).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사례 발표.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제2차 고향사랑 기부제 법인기부 포럼」 발표 원고, 세종회의실, 2024년 7월 18일.

국중호. (2022). 일본의 지방창생 제도 및 예산 규모 변화로 본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계지방자치동향」, 41: 18-21.

국중호. (2024). 일본의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 고향납세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제2차 고향사랑 기부제 법인기부 포럼」 발표 원고, 세종회의실, 2024년 7월 18일.

국중호·염명배. (2018).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3(2): 73-109.

국중호·염명배. (2021).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26(2): 69-99.

남황우. (2017).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191-225.

신두섭·염명배. (201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8(4): 145-194.

염명배. (2010).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71-111.

원종학. (2017).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재정포럼」: 6-23.

홍근석·염명배. (2019).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연구 2019-1.

奥谷明·村山和弘·勝谷聡一. (2023). 企業版ふるさと納税を通じた地方創生--京都府宇治田原町. 「公共空間: 政策の現場から最前線を伝える情報誌」, 21: 1-4.

河野真太郎.(2023). 「これからの「ソーシャル・グッド」の話をしよう。「効果的な利他主義」のジレンマを乗り越えるヒントとは」(https://ashita.biglobe.co.jp/entry/2023/10/31/110000) (검색일: 2024.5.26).

掛貝祐太. (2024). 「企業版ふるさと納税の批判的検討 -原則論, 導入過程, ウォーク・キャピタリズム」. 日本地方財政学会発表原稿,慶應義塾大学開催. 5月25日.

吉沢浩二郎 編著. (2018). 「図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高橋正憲·小坪拓也·竹田憲一. (2022). 企業版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地域課題解決プラットフォーム

の構築–SDGs スタートアップ方法論適用モデル ②.「プロジェクトマネジメント研究報告」, 2(1): 101-106.
財務省(各年度).「財政関係資料」.
渋沢栄一 著(守屋淳 翻訳). (2010).「現代語訳 論語と算盤」. ちくま新書.
植松利夫 編著. (2020).「図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総務省. (各年度).「地方財政統計年報」.
朝日新聞. 2024年6月28日付.
藤井大輔·木原大策 編著. (2022).「図説日本の税制』財経詳報社.
内閣官房·内閣府. (2024).「地方創生応援税制(企業版ふるさと納税)~制度概要編~」解説映像(https://www.youtube.com/watch?v=DgFn9AGRF1w)(검색일: 2024.7.6).
内閣官房·内閣府総合サイト「地方創生」. (2024). (ttps://www.chisou.go.jp/sousei/index.html)(검색일: 2024.7.6).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6).「平成28年度 地方創生関連予算等について」. 3月29日.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21).「令和3年度予算における地方創生予算等の体系」. 4月.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3).「企業版ふるさと納税(地方創生応援税制)について」. 11月.
内閣府. (各年度).「経済財政白書」.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4a).「企業版ふるさと納税」.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4b).「企業版ふるさと納税(人材派遣型)」.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4c).「企業版ふるさと納税の大幅な見直し(令和２年度~)」(https://www.chisou.go.jp/tiiki/tiikisaisei/portal/pdf/R2tirasi.pdf)(검색일: 2024.7.6).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4d).「企業版ふるさと納税の拡充·延長」.
鈴木善充. (2021). 企業版ふるさと納税についての検討.「近畿大学短大論集」, 54(1):19-31.
鈴木善充. (2023). 企業版ふるさと納税の現状と課題: 2020 年度改正の影響.「近畿大学短大論集」, 56(1): 1-13.
鈴木善充·橋本恭之. (2017).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研究—北海道下の市町村データによる分析—.「生駒経済論叢」, 15(2): 163-173.
Singer, Peter. (2015). *The Most Good You Can Do: How Effective Altruism Is Changing Ideas About Living Ethically.* Yale University Press.

국 중 호: 고려대학교 및 일본 히토츠바시(一橋)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요코하마(橫濱)시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게이오(慶應義塾)대학 경제학부 특별임용교수 및 와세대(早稲田)대학 국제교양학부 비상근강사도 겸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조세체계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고려대, 1995), 『人的資本投資と租税政策の経済効果』(히토츠바시 대학, 1997)이며, 연구 관심 분야는 재정, 지방재정, 한일경제 등이다. 최근 고향세 관련 논문으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비교 연구」(오가와 아키노부·염명배와의 공저, 2024) 등이 있고, 다른 논문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nd Optimal Commodity Tax Rates between Korea and Japan" (Seok Gyu Choi와의 공저, 2022) 등이 있다. (E-mail: kook@yokohama-cu.ac.jp).